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4.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3. 22.

다. 상정일자: 제2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3. 3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가. 제안이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에게 면접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범위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청년 구직비용 절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들에게 면접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경제 구조는 발전과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2022년 4/4분기 서울시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6.5%로 전년 동기(7.1%) 대비 0.6%p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전체 실업률(2.9%) 뿐만 아니라 30~59세 실업률(2.1%)과도 격차를 보이고 있음¹⁾.
- 또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²⁾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면접 준비 예상비용은 2021년 하반기 기준 평균 48만원임. 면접 준비를 위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면접 복장(59%)이었고, 다음으로 헤어·메이크업 등 외모 꾸밈 비용(51%), 화상면접 장소 대여 및 장비 구입(34%, 복수응답가능)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구직을 위한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높은 청년 실업률과 구직기간 장기화로 인한 취업준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마포구는 관내 거주 청년들의 취업 면접 지원 서비스인 ‘면접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임.

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행정구역(시도)/연령별 실업률)」/ 자료갱신일 2023-01-11
2) 2021년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 마포구 청년면접지원서비스³⁾

- 사업기간: 2023. 3. ~ 12.
- 사업대상: 마포구 거주 청년 250명(19세 ~ 34세 이하)
- 사업내용: 구직자 면접 헤어·메이크업비용 지원(1인당 연간1회 최대 6만원)
- 사업비: 16,500천원

-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 취업 무료 정장대여 사업인 “취업날개 서비스”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마포구는 정장대여를 제외한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취업날개 서비스 홍대점: 드림윙즈(마포구 동교동 161-5, 3층)

- 다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구 예산으로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추진이 불가능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⁵⁾)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면접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인 헤어 스타일링, 메이크업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⁶⁾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이 중 광진구는 “어학능력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관악구는 “구직 준비 비용절감을

3) 마포구 청년 면접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지원(붙임1 참조)

4) 2023년 자치단체별 청년 면접지원 정책 현황(붙임2 참조)

5)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6) 강남, 강동, 관악, 동작, 서초, 송파, 종로, 강북,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동대문, 영등포, 마포, 중구

위한 사진촬영, 외모꾸밈비용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개정조례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상위법령⁷⁾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취업 면접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면접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이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7)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3-31관련
----------	---------

발의년월일 : 2023. 4. .

발 의 자 :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접 준비 비용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주요내용

제6조제2항제1호 중 **메이크업** 등을 **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메이크업 등**”을 “**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사업 추진 · 지원)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사업 추진 ·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u>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등)</u></p> <p>2. <u>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u></p>	<p>제6조(사업 추진 ·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p> <p>1. ----- <u>메이크업, 사진촬영, 자격시험 응시료)</u></p> <p>2. <u>(개정안과 같음)</u></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10조(시행규칙)</u> <u>(개정안과 같음)</u></p>